

2022 세계한글어한마당 국제학술대회
[INK-KLACES 분과 / 발표2]

한글 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
: 표준화와 현지화의 문제

오지혜 (세명대학교)

1. 세계화 VS 현지화

○ 한국 언어문화의 위상 : 세계화 VS 현지화

- 정치, 경제, 문화 교류로 인함. 동력(動力) 또는 동인(動因)

○ '세계화'(민현식, 2005:99)

-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(수용하는 것). 또는 그렇게 되게 함. (표준국어대사전)

- 한국어를 온 세계 국민에게 알리고 '보급'하는 것.

▶ 한국어의 '세계화'는

한국어를 세계인들이 알고 배우기 쉽게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.

- '세계화' = '국제화'

1. 세계화 VS 현지화

○ 한국어(언어문화) 세계화

- 특정 언어의 세계화는 그 언어 사용 민족이 자신의 민족어를 강력하게 경제, 산업, 문화의 도구로 성공을 거두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.

(민현식, 2005:90)

⇒ '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 세계화'

▶ 타(외국) 언어문화로서가 아닌 세계 언어문화로서 한국 언어문화



1. 세계화 VS 현지화

- 세계화 단계(민현식, 2005:99-100)
 - 개별어 단계/개별 한국어 단계: 국력의 성장 발전과 교류 증가
 - 변이어(변종어) 단계: 제국주의 희생으로서 변이어 출현
 - 외국어 교육어(교류어) 단계: 국제 간 교류, 외국이 및 이종언어로서 한국어
 - 국제 외국어 획득 단계: 외교어로서 지위 획득
 - 세계(또는 지역) 공용어 단계: 표준 한국어의 권역별 또는 세계 공용어화

언어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
VS 언어의 현지화와 상호문화주의



2. 교육과정

○ 교육 환경의 변화

- **세계화의 시대**: 대학 교육, 한글학교 교육

→ **현지화의 시대**: 초중고등학교 교육, 세종학당 교육

● 해외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또는 제3외국어로 채택하거나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증가

- 대상 학습자, 학습 동기 및 목적의 변화

※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(2020.12. 기준)

2018년 28개국 1,495교 → 2019년 30개국 1,635교 → 2020년 39개국 1,669교

※ 제1외국어, 제2외국어 채택 현황

제1외국어: 베트남 등 / 제2외국어: 태국, 터키, 필리핀, 프랑스, 러시아, 인도 등

2. 교육과정

○ 교육 환경의 변화

● 교육과정의 성격

- **표준화**(통일, 규범) Vs **범용화**(참조)(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, 2022:69) → **현지화**

○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과 현지화 시대의 교육과정

● 세계화 시대

- 비정규 교육과정(문화체육관광부, 외교부; 세종학당, 한글학교)

- 표준 교육과정 및 표준화 교재

예)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교육과정 연구 개발(2009),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 표준교육과정(2010),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' (2010, 2016, 2017)

예) 범용 교재: 세종학당재단 <세종한국어> 등

● 현지화 시대

- 현지 학교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(교육부; 초·중·고등학교)

- 현지 교육과정 및 현지화 교재

예) 세종학당재단 <세종학당 특성화 사업>



3. 교재

○ 교재 개발의 변화

- 세계화 시대: 범용 교재(재외동포아동 대상 교재, 세종학당 교재 등)

→ 현지화 시대: 현지화 교재(지역 및 언어권별, 학습자 모국어권별 교재)

○ 현지화 교재 개발의 요구 증대

• 현지 해외 초·중등학교에서는

한국 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범용 교재나

해외 성인 학습자 대상 교재 또는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교재 사용

(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, 2022:67)

▶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요구



3. 교재

○ 현지화 교재 요건

- 현지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: 외국어교육정책 및 교과서 심의기준, 교육과정 편제(이미향·유은미, 2022:28)
- 학습자 요인 및 요구: 연령(인지적, 심리 정서적 발달), 목적, 학습 수준
- 교수-학습 상황(학년 Vs 속달도)
- 교사 요인 반영

대조언어학적 접근, 비교문화적 접근, 현지어 번역,
소재 및 맥락, 사진/삽화, 대화, 어휘 등에 있어서 현지화 및 실제성

3. 교재

○ 현지 교과서 개발

- 현지 교육자료 및 교구 필요(본책, 익힘책, 보조자료 및 교구)
 - 국내와 현지 집필진 공동 참여 및 역할
 - 현지 교육부와 현지 한국교육원(KEC)의 한국어 교과서
- 예) 태국 교육부-태국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과서 발간(2018)

○ 현지어본 한국어 교재 사용

- 예) 이화 한국어, 맞춤 한국어, 서울대 한국어, 서강 한국어 등

○ 현지 대학입학시험 대비 교재 개발

- 예) 태국의 PAT(Professional and Academic Aptitude, 2018)



3. 교재

○ 현지 대학입학시험 대비 교재 개발

예) 태국의 PAT(Professional and Academic Aptitude, 2018)

※ 2022년 기준, PAT 어학 과목 시험(21,485명)에서

- 한국어 선택 학생 수(3,770명)는 중국어(7,470명) 다음으로 많았음.
- 중국어 34.77%(7,470명) > 한국어 17.55%(3,770명) > 일본어 17.09%(3,672명) > 프랑스어 14.70%(3,158명) > 팔리어 10.99%(2,363명) > 독일어 3.97%(852명) > 아랍어 0.93%(200명)



3. 교재

- 한류 열풍 기반 한국 문화 수업용 교재 개발
 -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,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, 한국과의 교류 관계 및 정도, 상호문화주의

- 대학 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VS 한국언어문화 교육
 -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한국학과 한국언어문화 교육 접목
 - 예) 문학 교재

- 교사용 지도서 개발
 - 교사 변입, 특히 현지인 교사들 고려한 교재 필요
 - 한국인/현지인,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성, 한국언어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○ 교원 수급

• 세계화 시대: 국내 교원 파견 → 현지화 시대: 현지 교원 양성

예) 세종학당 교원 연수 확대 및 강화

• 국내 교원 파견

- 세종학당재단(문화체육관광부), 국립국제교육원(교육부), 한국국제교류재단/
한국국제협력단(외교부)

예)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<해외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>

예)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<객원교수 파견 사업>

• 현지 교원 양성 시 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 문제(정명숙, 2022)

- 파견 전 사전 교육: 현지 적응 교육(현지 언어 및 문화, 생활 및 교육 환경, 안전 등), 한국어어문화 교육 역량 교육

- 파견 후 교육: 현지 수업에 대한 보고, 평가 및 피드백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- 대학 교육에서 한국학 교육 Vs 한국어어문화 교육
 -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한국학과 한국어어문화 교육 접목
 - 예) 문학 교재

- 교사용 지도서 개발
 - 교사 변입, 특히 현지인 교사를 고려한 교재 필요
 - 한국인/현지인, 한국어어문화에 대한 전문성, 한국어어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



4. 교원 양성 및 재교육

○ 한국어교원의 자격

•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기능 및 성격 변화

- 국내외 국립 기관(국립국어원) 중심

→ 현지 교육기관 중심(한글학교, 현지 대학 등),

→ 국내 사이버대학 연계 학사 학위 과정 운영

예)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의 한국어 3급 교원 양성기관 인가

예) 재외동포재단 학위취득과정 지원 사업: 한글학교-국내 사이버대학
(한국어학과) 연계 학사 학위 과정



5. 정책

○ 국어기본법 [법률 제18761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「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](#)」에 따른 재외동포(이하 “재외동포”라 한다)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,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26.>

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제19조의2(세종학당재단 설립 등)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를 두고, 임원의 정원,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[정관으로 정하](#)되, 임원은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④ 재단에는 [정관으로 정하는](#)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
2.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(누리 세종학당) 개발·운영
3.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
4.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, 교육 및 파견 지원
5.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
6.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,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⑨ 법인·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

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(#)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[민법](#)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2. 5. 23.]

5. 정책

○ 국어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207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[법 제13조제5항](#)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언어정책분과위원회
 - 가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나.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다.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**
 - 라.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
 - 마.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2. 어문규범분과위원회
 - 가.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
 - 나.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
 - 다.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
 - 라.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
 - 마. 한자의 자형(字形)·독음(讀音) 및 의미에 관한 사항
 - 바.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
3. 국어순화분과위원회
 - 가.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
 - 나.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
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 ① [법 제19조제2항](#)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(이하 “한국어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30.>

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
- 2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·중·고등학교**
- 3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**
4. [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1조](#)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5.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**
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[문화체육관광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**고시하는** 기관 등

5. 정책

○ 국외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

● 세계화 시대

- 보편성. 제국주의적 접근. 동화주의적 관점, 보급 및 확산

- 하향식(Top-down): 정부 기관 주도. 보급 및 확산 지향

예) ‘세종학당 브랜드 통합’ (2016) : 국외에 한국어, 한국문화를 알리고 보급.
세종학당(문체부) - 한국교육원(교육부) - 한글학교(외교부)

● 현지화 시대

- 다양성/특수성. 공존주의적 접근. 상대주의적 관점. 상호소통 및 협력,
현지와의 소통 및 이해 기반.

- 상향식(Bottom-up): 현지 교육 현장 중심. 교류 지향

예) 교육부 <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> (2021)

: 현지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(학교, 학생, 교사, 교육행정가 지원)



참고문헌

- 강소희(2022), 태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,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306-319.
- 권응혜(2021),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 연구, 반교어문연구 58, 반교어문학회, 355-387
- 김성주(2005),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, 한국어어문화학 2-2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1-17.
- 김은경, 정호선, 유승원(2022), 해외 초·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,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67-76.
- 민현식(2005),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, 한국어어문화학 2-2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89-138.
- 성혜진(2019), 한국어 국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, 한국어어문화학 16-1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213-240.
- 이미향, 유은미(2022), 국외 중등교육기관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 변인 연구, 제 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28-39.
- 이선이(2009), 해외 한국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방안, 언어와 문화, 한국어어문화교육학회, 51-73.
- 정명숙 (2022)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파견 한국어교원의 역할,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, 국제한국어문화학회, 14-26.



감사합니다.

오지혜

irene927@hanmail.net